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희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12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6.

발 의 자 : 김희정 · 박준태 · 백종현
최수진 · 권영진 · 김종양
이종배 · 김은혜 · 김도읍
박정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 등(주류·마약류·환각물질 등)을 섭취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항공운송사업자가 자체 음주측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부 징계를 하면서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을 경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우려가 있음. 한편 다수의 인원을 수송하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음주상태로 근무하는 것은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횟수에 따른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.

이에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상태로 근무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

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, 주류등의 섭취·
사용등의 죄를 반복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 단속 및
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57조제6항 신설 등).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까지의”를 “제6항까지의”로 한다.

- ⑥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
제1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제16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의2.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항공운송사업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벌칙에 관한 적용례) 제1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이 법 시행 전에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같은 호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7조(주류등의 섭취·사용 제한) ① ~ ⑤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등의 종류 및 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제146조(주류등의 섭취·사용 등의 죄)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16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</p>	<p>제57조(주류등의 섭취·사용 제한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<u>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⑦ -----<u>제6항까지의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제146조(주류등의 섭취·사용 등의 죄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제2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</u></p> <p>제166조(과태료) ① -----</p>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·2. (생략)

<신설>

3. ~ 15. (생략)

② ~ ⑦ (생략)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2의2.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
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
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주류
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실
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
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
한 항공운송사업자

3. ~ 15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